

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(제정 2015. 4. 9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2에 따라 설치하는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
4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2.>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. <개정 2022.6.2.>

③ 교직지원부장,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<신설 2022.6.2.>

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2.>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6.2.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세부사항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6.2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